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무역조정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절차,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를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무역피해”를 “통상영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로, “무역조정지원시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를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을 “(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피해가”를 “통상영향이”로, “심각한 피해”를 “실질적 영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역피해를 입”을 “통상영향을 받”으로,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 이상”을 “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피해가”를 “영향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을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려하여”를 “고려한”으로, “피해가”를 “영향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의 수입”이란”을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로, “용역의 제공”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한쪽 당사국”으로, “대한민국”을 “다른 쪽 당사국”으로, “용역의 제공”을 “서비스 공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을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으로, “용역의 제공”을 “서비스 공급”으로 한다.

1.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

제6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자유무역협정”을 “통상조약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을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자연”으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을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을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자연”으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을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법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

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상담 지원”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을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으로, “상담지원신청서”를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을 “기술·경영 혁신”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로,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무역조정계획”을 각각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출자지원신청서”를 “출자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

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각각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로 한다.

제18조의3 후단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각각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의”를 “통상변화대응의”로, “대하여 그”를 “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으로,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지원센터의 구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으로, “지원센터의 장”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시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을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으로,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융자 지원”을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2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다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 (제2조 관련)”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 (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의 업종 중 “수도사업”을 “수도업”으로, “갬블링 및 베틱업”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으로, “서비스 활동”을 “서비스 생산활동”으로 하며,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우편업	611
-------	-----

별표 2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란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 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u>) 「<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u>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u>)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u>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u>(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 「<u>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제2조(<u>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u>) 「<u>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제3조(<u>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u>) ① ----- ----- ----- <u>통상변화대응지원 종합대책</u>----- ----- -----.

② (생략)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제4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

1. -----
통상영향-----
2.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4. -----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
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
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
산량이 감소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2.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
산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삭 제>

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상영향이 -----
----- 실질적 영향-----

1. ----- 통상영향을 받-----
-----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가. -----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
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
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영업이익 · 고용 · 가동률
·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
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
을 것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 5 이
상 -----
나. -----

----- 영향이

2. -----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

가. -- 통상영향이 통상변화
대응지원기업 -----

나. -----

----- 고려한 -----

영향이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⑤ 삭 제

⑥ · ⑦ (생략)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

③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품

2. 제공 수단, 목적·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삭 제>

<삭 제>

⑪ -----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⑫ (생략)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2. (생략)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

-----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1.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2. 한쪽 당사국 -----
---- 다른 쪽 당사국 -----
--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
----- 서비스 공급

⑫ (현행과 같음)

⑬ -----
---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
-----.

1. 2. (현행과 같음)

⑭ -----

는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
인으로 본다.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
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
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
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제7조(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
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

통상조약 등의

1.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자연-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법률

2.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자연-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법률

제7조(기술·경영 혁신 지원의 신

청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기술·경영 혁신
지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② 기술·경영 혁신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융자 지원을 받
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
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
의 기준·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

----.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
업으로 -----

-----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

-----.

② ----- 통상
변화대응계획-----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통상변화대응계
획-----

-----.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

법 및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3. (생략)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

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

1. -----

----- 통상변
화대응지원기업-----

2. 3. (현행과 같음)

② -----

----- 통상변
화대응지원기업-----

----- 출자 지원신청서-----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
정 요건 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
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
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
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
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
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
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
가치적 업무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
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
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의 지정 요건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의 지정 절차) ① -----
----- 통상변화대
응지원근로자로 -----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

②-----

-----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

-----.

④ -----

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
정신청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

-----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

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 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정신청서-----
-----.

② ---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신청서-----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신 설>

<신 설>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
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
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
유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
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통상변화대응의 -----
----- 그 -----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

-----.

<삭 제>

⑥ ----- 제5항-----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

항은 <u>지원센터의 장</u>이 정한다.	--- <u>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u>-----.
제20조(<u>무역조정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u>) ① 삭 제 ② (생 략)	제20조(<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u>)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u>추가징수금의 기준</u>) ①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u> 대하	제22조(보고명령) ①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 -----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 대응계획의 이행상황

2. (생략)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자 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

-----.

1. 통상변화대응계획 -----

2. (현행과 같음)

3. -----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

②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

1.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2.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③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제2항에서 정한 <u>무역조정계획</u> 또는 <u>통상피해대응계획</u> 의 <u>이행</u> <u>기간</u>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u>무역조정계획</u> 또는 <u>통상피해대</u> <u>응계획</u> 의 <u>이행상황</u> 에 관한 보고 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 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u>통상변화대응</u> <u>계획</u> 또는 <u>통상피해대응계획</u> 의 <u>이행기간</u> ----- <u>통상변화대응계획</u> 또는 <u>통상피</u> <u>해대응계획</u> 의 <u>이행상황</u> ----- ----- ----- -----.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 ----- -----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u>무역</u> <u>조정지원근로자</u> 또는 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u>통상피해지원</u> <u>근로자</u> 의 지정	1. ----- <u>통상</u> <u>변화대응지원근로자</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u>반환</u> <u>금</u> 및 <u>추가징수금</u> 의 부과	<삭 제>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9. <u>법 제25조제1항</u> -----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
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
· 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
한 업무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
원

7. (생략)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
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에 관한 업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삭 제>

2. ----- 통상
변화대응지원기업 -----
--

3. 법 제6조제2항-----

<삭 제>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
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
술·경영 혁신 지원에 필요한
업무

6. ----- 통상
변화대응지원기업-- 융자 지
원에 필요한 업무

7. (현행과 같음)

7의2. ----- 통상
변화대응계획 -----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9. ~ 12.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경영
· 회계 · 법률 · 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
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정보제
공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
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상담
에 관한 지원

7. ~ 12. (생략)

1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
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14. (생략)

<삭 제>

9.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 따른 통상
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 ·
경영 혁신 지원에 필요한 업
무

<삭 제>

7.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4조제2	----- (제24조----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
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	-----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	-----
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6조에 따른 <u>무역조정지</u>	1. ----- <u>통상변화대</u>
<u>원기업</u> 의 지정에 관한 사무	<u>응지원기업</u> -----
2. 법 제11조에 따른 <u>무역조정</u>	2. ----- <u>통상변화</u>
<u>지원근로자</u> 의 지정에 관한 사	<u>대응지원근로자</u> -----
무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u>24조제1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	<u>25조제1항</u> -----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연 락 처	(044) 203 - 5766